

기타 기술규칙 적용지침 개정(안)

강제부선규칙 적용지침



(1) 2019.07.01일자 시행사항 (건조계약일 기준)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8 장 불워크, 방수구, 통풍통 및 상설보행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불워크 및 보호난간</p> <p>202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방수구 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8 장 불워크, 방수구, 통풍통 및 상설보행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불워크 및 보호난간</p> <p>202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방수구 (2019)</p> <p>301. 일반</p> <p><u>1. 일반</u> 폰툰형 화물부선에 갑판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코밍 또는 기타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2항에 따라 적절한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<u>2. 방수구 면적</u></p> <p>(1) 기본면적 기본 방수구 면적은 규칙 4편 4장에 따르나, 현호 수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(2) 선평 수정 (1)호에서 결정된 방수구 면적은 다음에 따른 선평계수(f_b) 만큼 감소될 수 있다:</p> $f_b = (b/B)^2 / 0.85$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b = 코밍 측면간의 횡방향 거리 (m) B = 부선의 너비(m)</p> <p>(3) 높이 수정 코밍 측면의 높이(h_b)가 표준높이(h_s)보다 큰 경우, (1)호에서 결정된 방수구 면적은 다음에 따른 높이계수(f_h) 만큼 감소될 수 있다.</p>

